

2021년도 제18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7. 13.(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권현영(분과위원장), 김민아, 박정인, 임형주, 홍지만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강나래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692건(안건번호 제2021-80134호~80565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80134호는 ♣♣♣ 블로그에 악보 불법복제물의 판매글을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불법복제물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필요성 내지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80135호~80143호는 웹하드에 만화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내지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80417호~80565호는 밴드 및 모바일 웹하드 사이트에서 최신 영화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으로, 해당 영화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함.
-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479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권현영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180회 저작권보호심의
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
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 '♣♣♣♣♣♣',
'■ ■ ■', '♣♣♣♣♣♣', '♥♥♥♥♥', '◆◆◆◆◆', '△△△△△', '
▶▶▶▶▶' 등임.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
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권현영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5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692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80134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블로그에 게시된 악보 판매글을 신고하였음.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B 위원: 의뢰하는 사람이 악보를 제공하고 조옮김 등 편곡을 의뢰하고 있는 것인지?

- 강나래 전문위원: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판매자가 채보까지 직접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조옮김의 경우 합법 시장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편곡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합리화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E 위원: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합법 시장의 악보와 비교해 보면,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함. 합법 시장의 악보를 베껴서 판매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설사 합법 시장의 악보를 베꼈다 하더라도 이를 본인만 이용하는 등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볼 사정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지겠으나, 전송하고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로 판단됨.

- D 위원: 현재도 전송 중인 상태가 아닌지?

- 강나래 전문위원: 그러함. ◁◁◁◁◁ 라는 업체명으로 악보를 만들

어 사업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며, 현재 전송 중인 사실까지 확인이 되었음.

- B 위원: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볼 여지는 없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영리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이상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C 위원: 저작권법 제36조는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 등의 경우 저작물을 편곡 또는 개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안의 경우 채보 및 편곡 자체를 영리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1-80134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C, D, E 위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80134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80135호~80143호는 민원인이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에 게시된 만화 불법복제물을 신고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B, D, E 위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80135호~80143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80144호~80416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음악, 프로그램, 게임, 출판,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방송)페이트: 윈스의 전설(2021)’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80218호 ‘(방송)페이트: 윈스의 전설(2021)’는 2021. 1. 22. 공개한 해외 드라마로 웹하드에서 170포인트에 판매 중임.

(출판 ‘(출판)웹소설만 읽으면 강해져(출판:제이플미디어,시리즈,카카오페이지)’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80273호 ‘(출판)웹소설만 읽으면 강해져(출판:제이플미디어,시리즈,카카오페이지)’는 2020. 7. 연재한 웹소설로 웹하드에서 50포인트에 판매중임.

(게임 ‘(게임)길티기어 -스트라이브- GUILTY GEAR -STRIVE- (202

1)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80412호 '(게임)길티기어 -스트라이브- GUILTY GEAR -STRIVE- (2021)'는 2021. 6. 1. 발매한 PC 게임으로 웹하드에서 1,710포인트에 판매 중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위 3건을 포함한 479건에 대해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1-80144호~80416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B, C, D, E 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80144호~80416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80417호~80565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보호원이 현재 긴급으로 처리하고 있는 영화 '□□□□' 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모바일 웹하드 및 밴드에 해당 영화가 게시되어 있음.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최신 저작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 B, D, E 위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80417호~80565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1-80134호, 안전번호 제2021-80135호~80143호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1-80144호~80565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o 권헌영 분과위원장이 제18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18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7. 20.

분과위원장 권헌영

위원 김민아

위원 박정인

위원 임형주

위원 홍지만